

7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충청북도가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계	1,574,542	221,211	266,856	392,785	566,837	37,053	1,195	88,604	-
국비	1,211,678	157,751	214,403	238,870	501,172	19,392	-	80,090	-
시·도비	362,864	63,460	52,453	153,915	65,665	17,661	1,195	8,5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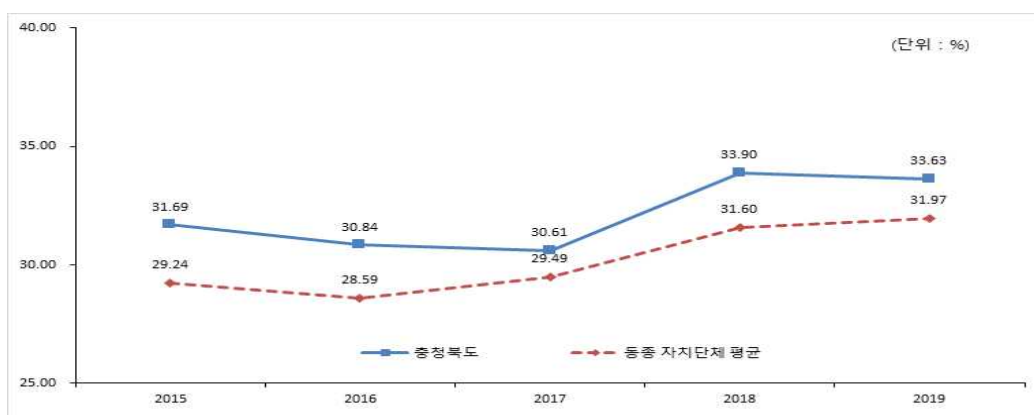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3,458,003	3,750,312	3,861,971	3,885,469	4,681,324
사회복지분야(B)	1,095,764	1,156,619	1,182,138	1,317,326	1,574,542
사회복지분야비율(B/A)	31.69	30.84	30.61	33.90	33.63
인구수(C)	1,583,952	1,591,625	1,594,432	1,599,252	1,600,00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92	727	741	824	98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는 2018년 기초연금인상 및 아동수당 신설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비율이 증가 하였으며, 2019년 총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2,572억이 증가하였고 취약계층지원 부문 787억원, 노인·청소년 부문 994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250,277	85,468	1.63	
민간경상보조(307-02)		47,356	0.90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8,691	0.17	
민간행사보조(307-04)		8,538	0.16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919	0.0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1,318	0.22	
민간자본보조(402-01)		4,646	0.09	

-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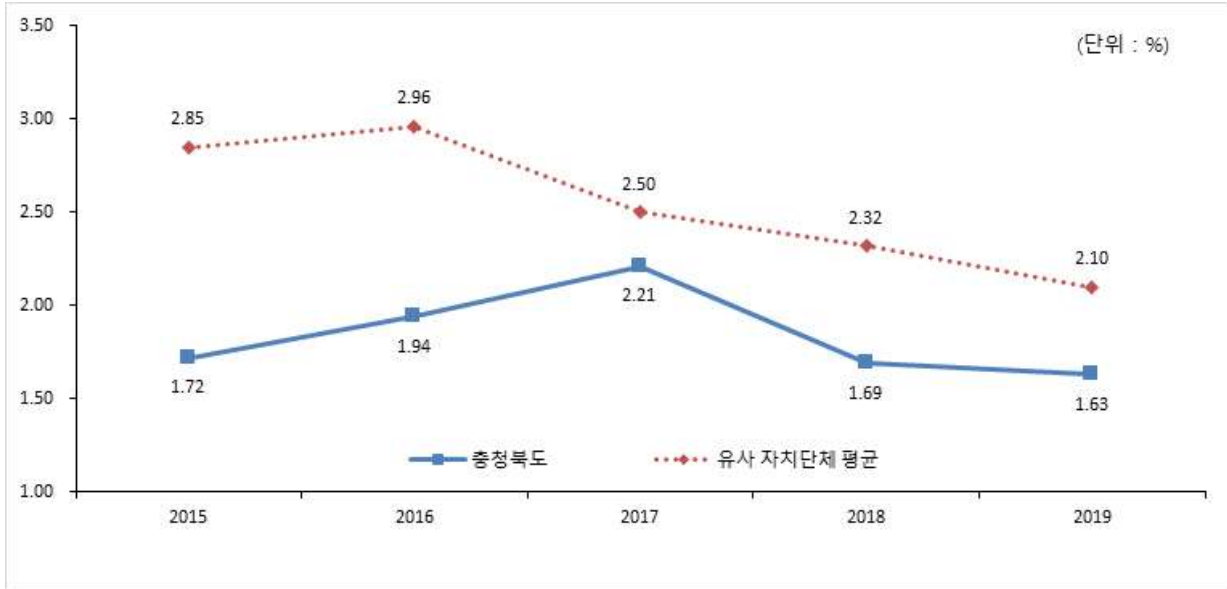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458,003	3,750,312	3,861,971	4,353,903	5,250,277
지방보조금(민간)	59,452	72,914	85,383	73,599	85,468
비율	1.72	1.94	2.21	1.69	1.63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별첨 7-2-1]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용 참조			

❖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별첨 7-2-2]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용 참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7-2-1\]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과

[\[별첨 7-2-2\]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을 참조하세요.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별첨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참조					

-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참조하세요.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변동내역
[별첨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참조									

-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참조하세요.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금액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충북씨름왕선발대회	충북씨름협회	69	용도의 사용, 업무상횡령, 거래과장	'19.7.18.	교부결정취소 (16)

7-6.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충청북도가 2019년 한 해 동안 도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681,324	13,060	0.28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3,458,003	3,750,312	3,861,971	3,885,469	4,681,324
행사·축제경비	3,244	2,357	9,312	12,130	13,060
비율	0.09	0.06	0.24	0.31	0.28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회계연도부터 전국적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통계목(307-04)이 공시항목에 포함되어 비율과 경비가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국규모 순회행사인 2019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따른 행사·축제경비 1,14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